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8. 27.(목) 총 5매(본문3, 참고2)	
담당 부서	건설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주종완, 사무관 이기림, 주무관 김민태 • ☎ (044) 201-4597, 4962	
보 도 일 시		2020년 8월 28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7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건설사업자가 앞장섭니다.

-첫 시행 「건설근로자 고용평가」 결과...신청기업 절반 고용상황 개선 -21년부터 1~3등급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시 혜택 부여할 예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'건설근로자 고용평가'의 2020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.

○ 이는 지난 '19.12월 도입(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) 이후 첫 평가로, 정규직 비율 등을 기초로 '18년 대비 '19년(전전년도 대비 전년도)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1~3등급을 부여하였다.

<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평가방법 >

- 전체근로자수 대비 정규직 수 비중을 기본으로, 신규채용비율 및 청년(만 29세 미만) 신규채용비율을 각각 10% 가산하여 산정
- 고용평가가 양수인 업체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1~3등급 부여(상대평가)
* (1등급) 상위30% 미만, (2등급) 상위30% ~ 70% 미만, (3등급) 상위70% 이상
- ①가족친화인증기업, ②현장 편의시설 설치, ③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·시행, ④선택적 복지제도 실시기업은 10% 가산(증빙서류 必)

*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= 전년도 고용평가** - 전전년도 고용평가**

**
$$\frac{\text{정규직 수}}{\text{전체 건설근로자 수}} + \left(\frac{\text{신규 정규직 수}}{\text{정규직 수}} \times 0.1 \right) + \left(\frac{\text{청년 신규 정규직 수}}{\text{신규 정규직 수}} \times 0.1 \right)$$

- 자세한 평가결과는 각 협회 누리집(홈페이지)*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, '21년 평가부터는 1~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 능력평가 시 혜택(건설공사 실적 3~5%가산)가 부여된다.

* 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

- 총 4,340개사가 신청한 이번 평가에서 1~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2,174개사(신청기업의 50.1%)이며, 이 중 877개사(신청기업의 20.2%)가 1등급을 획득하였다.

- 한편, '18년 대비 '19년 정규직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고용평가 점수가 떨어진 2,166개사는 이번 평가에서 등급을 획득하지 못했다.

전체 신청기업 (4,340개사)			
←'18년 대비 '19년 정규직 고용 개선→		←'18년 대비 '19년 정규직 고용 저조→	
1등급 (877개사)	2등급 (714개사)	3등급 (583개사)	등급 외 (2,166개사)
상위 30% 미만	30%이상~70%미만	상위 70% 이상	
30%	70%	100%	

- 종합·전문건설사의 등급별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.

구분 (단위: 개사)	총 신청기업 수	1등급 (상위 30% 미만)	2등급 (30% ~ 70%)	3등급 (상위 70% 이상)	등급 외
종합건설업	1,333 (100%)	243 (18.2%)	316 (23.7%)	238 (17.9%)	536 (40.2%)
전문건설업	3,007 (100%)	634 (21.1%)	398 (13.2%)	345 (11.5%)	1,630 (54.2%)
계	4,340 (100%)	877 (20.2%)	714 (16.5%)	583 (13.4%)	2,166 (49.9%)

* 건설근로자 고용평가('19년 고용평가 - '18년 고용평가)가 '0' 또는 음수인 건설사

- 신청한 기업들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, 정규직* 고용비율은 '18년 (57.4%, 55,031명) 대비 '19년(59.1%, 57,555명)에 1.7p% 증가하였으며, 대형 건설사일수록 정규직 고용비율도 높았다.**

* 고용평가제도 상 '정규직'이란 '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'를 의미

** (49인 이하) 48.6 → (50~299) 54.1 → (300인 이상) 69.7 ('19년 기준, %)

- 또한, 정규직 중 신규 정규직(2년 이상 3년 미만) 비중 역시 '18년(16.1%) 대비 '19년(18.1%)에 2p% 증가하였다.
- 한편, 올해 평가에 신청하여 1~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의 수는 경기(796개사), 전남(174개사), 경북(149개사) 순으로 많았다*.

* 신청 건설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

-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“내년부터 고용평가 결과가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만큼, 고용평가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- “고용평가가 건설근로자 고용실태, 건설사의 복지증진 노력 등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하여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고용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완·반영해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이기림 사무관(☎ 044-201-45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건설근로자와 함께합니다.
함께하는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입니다.

2020년부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새롭게 시행합니다.

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

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
건설근로자 고용실태,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
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에
대해 시공능력평가 등에 우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※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, [별표6]

- **신청대상**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
- **신청기간** 매년 4월 1일 ~ 4월 15일
- **서류접수처** 건설업 등록업종 관련협회
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
※종합/전문 겸업업체의 경우, 전년도 시공능력평가금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제출
- **제출서류** ①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*시행규칙[별지 제25호의2서식]
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(전년도, 전전년도)
- **평가방법**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1~3등급 부여
고용평가는 정규직비율, 신규 정규직비율,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
- **평가혜택** 우수업체의 경우, 매년 시공능력평가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차별
가중평균액의 3~5% 가산 (2021년부터)
- **결과공표** 매년 6월말 (관련협회 홈페이지) *2020년 평가는 8월 말 공표예정

01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

*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[별표6]

☞ **건설근로자 고용평가** = 전년도 고용평가 - 전전년도 고용평가

☞ **해당년도 고용평가**

$$\left(\frac{\text{정규직수}}{\text{전체건설근로자수}} \right) + \left(\frac{\text{신규정규직수}}{\text{정규직수}} \times 0.1 \right) + \left(\frac{\text{청년신규정규직수}}{\text{신규정규직수}} \times 0.1 \right)$$

0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우대사항

*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/100 가산

● **가족친화인증기업:**

「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증 받은 건설사업자

● **현장 편의시설 설치:**

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

● **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:**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,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

● **선택적복지제도 운영:**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81조에 따른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, 같은법 제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

03 등급별 시공능력평가 가산비율

* 종합건설업체 전체, 전문건설업체 전체 단위별로 등급 부여

고용평가대상	고용평가등급	등급배분기준	가산비율
종합, 전문 건설업체	1등급	상위 30%미만	5/100
	2등급	상위 30%이상부터 상위 70%미만	4/100
	3등급	상위 70%이상	3/100

CAK 대한건설협회

대한전문건설협회

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

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